#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4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김종민·서미화·임미애

김영배 • 이용선 • 서영교

윤한홍 · 최형두 · 안도걸

이재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 고 있음. 최근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질 경우 국가안보 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

하며, 국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글로벌 패권경쟁과 외교적 상황 변화, 기술혁신의 한계 등 환경이 급변하며 K-반도체의 미래는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산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

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 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도록 함(안 제5조).
-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 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반도체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 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서 산업집적기 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 2항).
- 사.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 아.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조성에 수반되는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 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14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계·제조·공급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
    -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 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 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

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 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 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제5조(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의 지원과 지역균형발전 연계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산업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 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 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 4. 제8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조성·운영·지정·해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 9. 반도체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워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 회 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

- 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반도체 산업혁신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정하는 지역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 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반도체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변경 및 해제) ① 반도체산업발전클 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반 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 사유가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있다.
  -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산업발전

클러스터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8.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 업발전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도로

- 5.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산업발 전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과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 요비용
-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 업 등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 3.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반도체 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 제11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 ·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 5. 그 밖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 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 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리주체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내의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 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원 사업
  -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차입금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2.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 금 지원
- 3.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4.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기과의 설치·운영
-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0.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등

- 제15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 체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